

2020년 하반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·점검 및 홍보·계도 계획

1. 목적

-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차단하여 하수의 수질악화를 방지
- 불법제품에 대한 지도·단속을 통한 업정대처와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·계도로 시민의식 제고

2. 그간 추진경과

□ 단속, 홍보·계도 현황

- (단속) '13년 이후 매년 상·하반기 전국 지자체별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 업체 적발 조치

< 연도별 점검실적 >

구분		총계	'13	'14	'15	'16	'17	'18	'19	'20.상반기
제조·판매자	점검수	2,114	75	227	481	403	326	255	216	131
	위반수	34	2	2	7	6	7	2	6	2
사용자	점검수	1,614	6	91	216	42	63	26	592	578
	위반수	16	6	1	3	-	2	-	3	1

- (홍보·계도) 판매·사용자 등에게 불법제품 구별방법 및 위법행위시 처벌조항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시민의식 제고

<연도별 홍보·계도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반영 실적>

구분	'14	'15	'16	'17	'18	'19	'20.상반기
홍보·계도	3,367건	약 1,100건	약 400건	706건	899건	736건	494건
공동주택관리 규약반영	-	-	-	67.9%	43.7%	63.4%	66%

3. 단속·계도(홍보)계획

□ 지도·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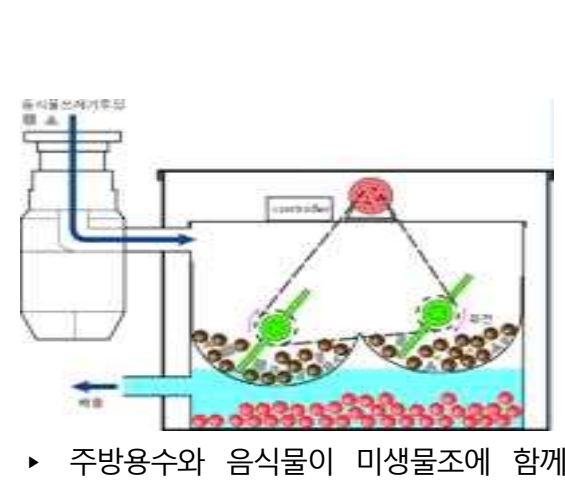
- (기간) '20.11.23 ~ 12.31, 단속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
 - (대상) 제조·판매자, 사용자
 - (점검기관) 지방자치단체, 유역(지방)환경청, 한국물기술인증원(인증기관)
 - (주요내용)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의 불법 개·변조 제조·판매·사용자에 대하여 점검 실시
 - (유역(지방)환경청) : 제조자 지도·점검(붙임1)
 - (지자체) : 관할구역 내 주방용분쇄기 판매자(붙임2), 아파트 입주박람회장,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(음식점, 병의원, 마트 등) 점검
 - (한국물기술인증원) 대형포털·홈쇼핑·온라인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허위·과장 광고 및 불법제품 홍보·판매 게시글 점검*, 시판품 조사 실시
- * 점검 후 불법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하고, 필요 시 유역환경청과 지자체에 점검(조사) 요청

□ 홍보·계도

- (유역(지방)환경청) 제조자에 계도 실시, 홍보물을 이용하여 SNS, 홈페이지 및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·계도
- (지자체) 판매점, 공동주택 등에 홍보·계도, 홈페이지, 전광판, 게시판 등을 이용한 홍보,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분쇄기 사용금지 조항 신설 권고
- (한국물기술인증원) 홈쇼핑·온라인 판매점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법 제품 유형 및 판매 게시글 게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 실시

붙임 주방용오물분쇄기 구조 및 불법 사례

1.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의 구조

구분	분쇄회수방식	
	거름망형	스크류형
모식도	 <p>▶ 칼날, 맷돌 등으로 음식물 분쇄 후 거름 장치를 이용해 회수</p>	 <p>▶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음식물을 분쇄와 동시에 회수</p>
분쇄부		
구분	미생물방식	
	주방용수 우회배출형	주방용수 직투입형
모식도	 <p>▶ 주방용수는 배출하고 음식물만 미생물조에 투입하여 처리</p>	 <p>▶ 주방용수와 음식물이 미생물조에 함께 투입되어 처리</p>

2.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인증제품 및 불법 제품 판매 유형

□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 인증 현황

(’20.4. 기준)

구분	계	인증	인증 심사 중	인증만료
업체수	147	42	16	89
제품수	251	99	27	125

□ 불법판매 유형 등

- (판매방법) 현행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을 인증받고 제작시는 인증제품과 다른(기능·고형물 회수율 등) 제품을 제작·판매
 -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지역 등에서 판매
- (불법판매 유형) 2차 처리기 내부기능(수거망·하부거름망) 탈·부착 또는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
 - 제품인증표시 미부착, 인증기간 경과제품 판매 등

〈불법판매 제품사진〉

		
분쇄부와 2차 처리기 분리됨		2차 처리기 제거 후 분쇄부에 S트랩 연결(100% 배출)
		
2차 처리기에 배출거름망 없음(100% 배출)		2차 처리기의 배출거름망 분리 (배출거름망이 금속재질이 아님)

3.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 개·변조 사례

□ 점검 시 착안사항

-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분리·배출할 수 있도록 회수부 덮개가 개폐 가능함을 확인.
- 회수부 내부의 거름망(여과망)이 고정되어 있어야 함.
-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의 경우, 분쇄·회수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미생물조에 있는 음식물을 회수하지 아니함.
-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의 경우, 외형적으로 개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, 내부구조가 최초인증 받을 당시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.

□ 분쇄형 분쇄기 불법 개·변조 사례



- 분쇄기만 단독사용, 2차처리기 없음



- 분쇄부와 회수부가 분리되는 경우
 - 소비자가 직접 개·변조가 용이 하도록 한 볼트, 너트 체결방식은 일체형으로 인정하지 않음.



- 거름망(여과망) 제거



- 회수부를 우회하는 배관 연결



○ 회수부 내 거름망 일부 절단

□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 불법 개·변조 사례



○ 분쇄기와 2차측(미생물액상발효소멸조)의 연결부를 단순자바라 호수로 쓰는 경우
 - 일반 자바라 호수를 사용하여 설치



- 전선이 들어간 자바라 호수를 사용하여 설치

4. 인증 유효기간 및 표시사항 관련 사항

□ 인증만료일 이후 제조여부 확인

-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·사용금지(환경부고시 제2017-13호)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이 기간 중 인증제품의 제조·수입·판매가 가능함
→ 따라서 인증만료일 이후 제조·판매가 되는 제품은 하수도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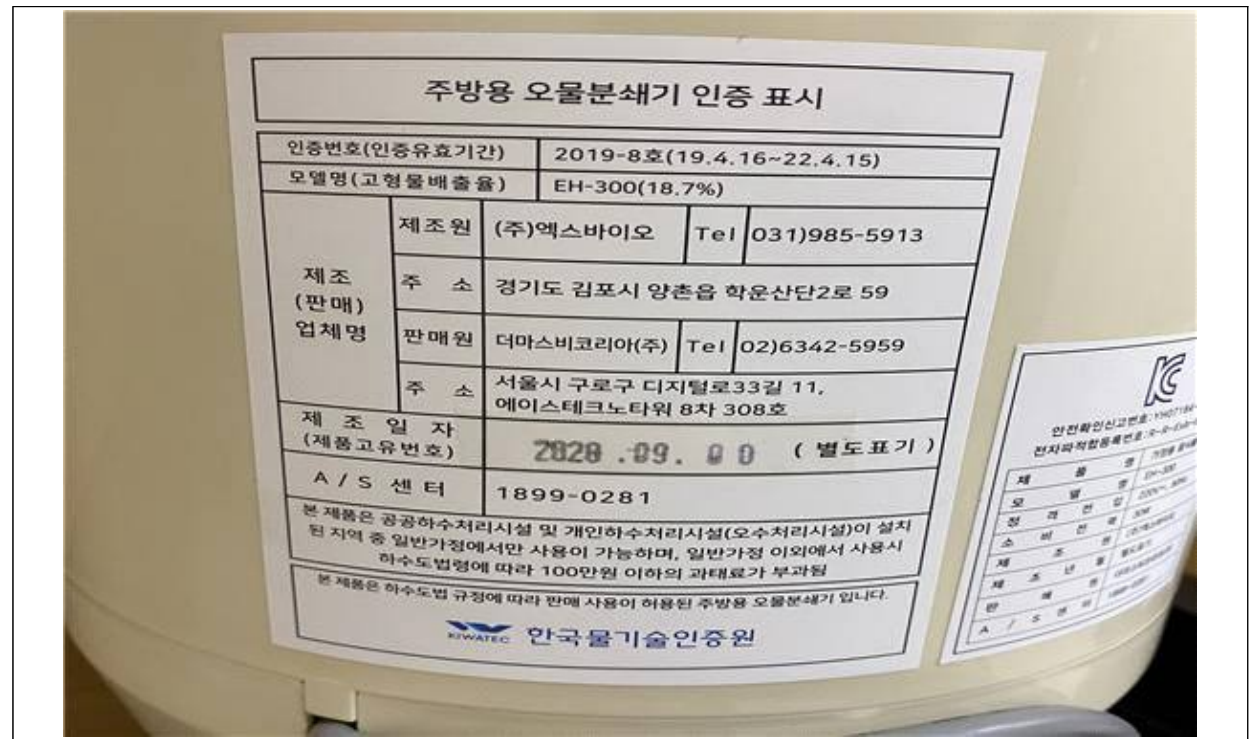
<인증기간에 따른 판매·사용 가능 여부(예)>

구분	인증일	유효기간(3년)	인증만료일	유효기간 만료
일자	2014.3.30	↔	2017.3.29	↔
합법여부		제조·수입·판매 가능		제조·판매 불법

※ 다만, 인증유효기간 내 제조된 제품이,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이를 불법제품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미비함

<조사 시 착안사항>

- 인증제품에 부착된 인증표시사항의 '인증유효기간'과 '제조일자'를 검토하여 제조 일자가 인증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



□ 인증 표시사항 제품부착 여부 (계도사항)

○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·사용금지(환경부고시 제2017-13호) 제9조제3항 및 상기 별표 5에 따라 인증 표시사항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음.

→ 다만 2014년도 이전 인증제품의 경우, 인증표시 기준이 없어 인증기업에서 자체 인증번호, 모델명, 시험기관 등을 표시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함

※ 인증표시 사항 미부착 또는 내용 누락 시 법적 제제사항(벌칙, 과태료)은 없으나 해당업체에 대한 계도 필요

<14년 이전 인증제품 인증표시 사례>



<14년 이후 인증제품 인증표시 사례>

